

제1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(제 2 차 본 회 의)
2013.6.25(화) 13:30

조례안 심사 보고서

총무위원회

[전문위원 임종호]

목 차

1	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2
2	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5

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6. 12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6. 13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6. 25

2. 제안이유

- 안전관리 총괄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정부의 “안전한 사회 구현” 의지에 부응하고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부서장의 사무를 분장·조정(안 제3조)
 - 행정과 → 재난관리과
 - CCTV 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
 - 건설교통과 → 재난관리과
 -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
 - 재난관리과 → 건설교통과
 - 하천에 관한 사항
 - 재난관리과 사무신설
 - 안전관리, 재난 대응 총괄조정, 재난현장지휘소 운영, 자치단체 재난 및 국가기반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등

나. 부서 명칭변경(안 제3조)

- 건설교통과 → 건설과 ○ 재난관리과 → 안전총괄과

다. 부서 직제순위 조정(안 제3조)

- 재난관리과 13위 → 7위

라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

- 보건진료원 → 보건진료소장(안 제9조, 제10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“안전한 사회구현” 의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총괄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

○ 그 주요내용을 보면

- **안 제3조**에서 ‘행정과’의 CCTV 관제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‘건설교통과’로 이관하고 재난관리과의 하천에 관리 업무는 건설교통과로,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업무는 재난관리과로 이관토록 하였으며,

- **부서명칭을** ‘건설교통과’는 ‘건설과’로, ‘재난관리과’는 ‘안전총괄과’로 변경하여 ‘재난관리과’ 부서 직제순위를 13위에서 7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, ‘보건진료원’을 ‘보건진료소장’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

-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6. 12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6. 13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6. 25

2. 제안이유

- 행정기구 개편, 총액인건비 정원 증원, 사회복지인력 확충, 기능직 일반직 전환과 퇴직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증원(안 제2조)

- 정원의 총수 : 655명(현행) → 658명(증 3명)
- 집행기관의 정원 : 641명(현행) → 644명(증 3명)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(안 별표 3)

-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: 증 5명(본청 3, 의회1, 사업소 1명)
- 기능직 : 감 2명(본청 1, 의회 1명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
- **그 주요내용을 보면**
 -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은 5명이 증가되고 기능직의 경우 2명이 감소되는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
-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